

## 도서관법개정법률안

議 番	案 號	513
--------	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1987. 10. 5

발의자: 金賢子 · 曺祥鉉 · 趙一文 ·  
陳治範 · 金炯孝 · 韓良順 ·  
朴聖泰 · 洪鍾旭 議員  
外 30人

### 제안이유

현행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제정 · 공포(법률 제1424호) 된 후 24년이 경과되어 급변하는 현대 정보 · 산업사회에서 다원화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, 도서관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재정립하고 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 · 공공도서관 · 대학도서관 · 학교도서관 ·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각기 그 특성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, 도서관의 육성 ·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도서관진흥기금의 설치 및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정보협력망의 구성 등 도서관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가. 도서관의 개념을 도서자료의 수집 · 정리 · 보존 및 이용등 소극적인 기능수행에서,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· 정보의 제공과 효율적인 유통,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수행의 현대적 도서관개념으로 재정립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도서관의 종류를 전문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· 공공도서관 · 대학도서관 · 학교도서관 ·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각각 구분함(안 제3조).

- 다. 사서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서직원의 자격을 1급정사서 · 2급정사서 · 준사서로 각각 구분함(안 제7조 제2항).
- 라.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9조).
- 마.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 · 시설 · 운영 기타 도서관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바.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의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15조 및 제16조).
- 사.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서지정보에 관한 유통의 촉진을 위하여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도록 제도화하고, 그 실시시기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여건이 조성된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8조 및 부칙).
- 아.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교육 · 문화시설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함(안 제22조).
- 자.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이용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조직체로서 도서관정보협력망을 구성하고, 그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도록 함(안 제41조).